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학대 등 신고 범위 확대 및 장애아동학대
예방대응협력 체계 강화 등〉

■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12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애인학대 등 신고 범위 확대	3
2. 장애아동학대 예방·대응·협력 체계 강화	9

I. 개요

1. 강득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12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득구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11.
- (3) 회 부 일 : 2025. 11.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보호체계와 장애인보호체계를 동시에 적용받아 사건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장애아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의 장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고, 피해자인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59조의4제4항 신설).

- (3)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9조의21제1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애인학대 등 신고 범위 확대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59조의4 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 ----- <u>경우 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u> ----- ----- ----- -----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u>경우에는</u>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 ----- ----- ----- <u>경우 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u> ----- -----

	-----.
1. ~ 22. (생략)	1. ~ 22. (현행과 같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등’이라 함)를 알게 된 사람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 그 종사자 등 일정 범위 직무 관련자들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2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고용이 실시되는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2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상시종사자가 30명 이상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장애인학대등에 대한 신고인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조건의 차별적 조치
6.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제86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② 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

제1호가목²⁾,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³⁾ 등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편,

신고의무자(제59조의4제2항)의 경우는 장애인학대등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⁴⁾

□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등을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 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등을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현장 실무 상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2024년 6,031건으로,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3,033건(50.3%), 일반 사례는 2,998건(49.7%)임.⁵⁾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355.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5)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5). 2024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01 장애인학대 인지와 대응



인지

장애인학대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 가능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

대응

장애인학대 인지시 신속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장애인학대신고시 도움이 되는 정보

“ 신고자 관련 정보 ”	“ 피해자 관련 정보 ”	“ 학대 관련 정보 ”
☒ 신고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학대피해장애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 학대피해장애인의 현재 상황 안전여부, 건강상태, 응급조치 필요성 등	☒ 구체적 학대 내용 일시, 장소, 학대행위 의사자, 최초발생시점, 학대의 지속여부 등

자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https://www.naapd.or.kr/data/edu>

- 참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를 신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의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5(노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한편, 개정안에 따라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에 상응하여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도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장애인복지법」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 아울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된 2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과정에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구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045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347호)
관련 내용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로 신고 범위를 확대	‘의심되는 경우’까지로 신고 범위를 확대

2. 장애아동학대 예방·대응·협력 체계 강화

- 개정안은 ①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즉시 수사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협조 및 전문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③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및4항, 제59조의7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신설>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④ ~ ⑦ (생략)

⑧ 제4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등의 안내, 제5항에 따른 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②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행

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⑨ -----
-----제6항-----
제7항 및 제8항-----
-----.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지체 없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⑥ 제4항-----

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⑧ 제7항의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신설>

-----.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⑨ 제8항-----

-----.

법률 제2111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21(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6조(벌칙)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생략)

④·⑤ (생략)

제9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의4. (생략)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③ 그 밖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제4항-----
제6항-----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의4. (현행과 같음)

3의5. 제59조의7제7항-----

3의6. ~ 7. (생략)	3의6. ~ 7.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 장애아동은 발달 특성상 자신의 피해 상황을 인지하거나 외부에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조기 발견과 관계기관 간 연계에 기반한 대응체계가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장애아동을 고려한 대응 절차와 체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특히, 현장 대응기관이 피해자를 장애아동으로 인지하였음에도 즉각적인 정보 공유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한 맞춤 절차와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⁶⁾⁷⁾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아동 등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신고접수부터 조사, 사례 판단·관리, 통계 관리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6) 김아름, 박은영, & 김재선. (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7) 원혜옥, 강정은, 마한열, & 김재선. (2022).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중 단계별 조사 협조 체계 >

단계	기 존	개 선
신고접수	112(아동학대신고)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애인학대신고)에서 신고 접수, 정보 공유 미흡	신고 후 상호 통보하여 재신고·동일신고 여부 확인
조사	신고 접수기관별 학대 조사 (경찰·지자체/옹호기관)	상호 협조를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
사례 판단·관리	신고 접수기관별 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아보전/옹호기관)	상호 인력 지원 (아동 전문가, 장애 전문가)
통계 관리	기관별 통계 관리	통계 공유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2023년에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⁸⁾을 마련하여, 장애아동 학대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접수 후 상호 통보 → (학대조사) 사안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하거나, 사전협조를 거쳐 경찰, 상호기관 간 공동 조사 → (학대판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각각 학대 여부를 판단하되, 기관 간 협의 → (사례관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로 판단한 경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로 판단한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 및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순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참고자료 1: 장애아동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현황).

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에서는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조사, 조치 등 주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내부 편람으로, 아동학대의 은폐·반복·심화 가능성이 높고 발견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할 때, 지침의 세부적인 내용 공개 시 학대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나 경찰 수사에 대비 또는 방해할 우려가 있어 동 지침을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하였음.

□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피해자인 학대·성범죄 사건의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현장 출동자의 통보·통지 의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협력 및 전문적 지원 근거를 정책 또는 지침 수준에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아동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와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취지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제59조의4제3항)에서는 사건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사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및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도 각각 신고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받은 기관 간 상호 통보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통보 대상을 시·도 및 시·군·구 모두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 보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59조의7제3항과 같이 시·도 또는 시·군·구로 통보 대상을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제59조의4제4항 후단)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피해장애아동쉼터⁹⁾ 또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 등과 역할 중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률 단계에서 장애아동 특성 평가, 의사소통 지원, 조사 동행, 사례관리 연계 등 ‘전문적인 지원’의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개정안(제59조의7제3항)에서 학대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지체없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미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또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접수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개정안 제59조의4제3항), 내용상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특히, 현행법 제59조의7제1항¹⁰⁾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동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어느 기관이 통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불명확하여 그 책임소재에 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넷째,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59조의21) 관련, 개정안에서는 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 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서 이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로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 및 협조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와 같이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구축하는 협력체계와 중복되어 운영상 효율성을 저해하고,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현행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구축하는 협력체계는 ‘장애인학대 전반’을 포괄하는 반면, 개정안은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협력체계를 새롭게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 현재의 협력체계 안에서 피해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유와 사후지원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범위와 역할을 보다 세밀하게 정비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347호)가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최보윤의원안 및 개정안 주요 조문 비교 >

최보윤의원안	개정안	비고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 사건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도 신고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과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최보윤의원안의 경우,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접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의 상호통지 규정, 장애아동은 시·도 및 시·군·구에도 통지
	④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아동	

	복지법」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인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⑥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지체 없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지체 없이 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동일
제59조의20(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21(피해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아동 쉼터,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 시·군·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일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절차를 별도 법률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5771호)¹¹⁾이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2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장애인학대범죄를 인지한 수사기관의 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공, 인력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현장출동) ①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사법경찰관리나 직원이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⑥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동 제정안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4.30.)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을 마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를 아동, 노인 등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아동 학대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낮음.

또한, 아동, 노인 대상 학대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과 체계가 기(既) 마련되어 있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됨¹²⁾.

나. 관계 단체

단체명	의견
중앙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안 제59조의4 제1항·제2항 관련) 신고범위를 ‘학대 또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조정하여, 신고의무의 명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체명	의견
	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정성을 보완할 필요 • (안 제59조의4 제3항 관련) 장애아동인 경우 수사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보를 ‘신고사실의 통보’로 규정함으로써, 통보 내용의 성격과 범위를 둘러싼 혼선을 줄일 필요, 다만, 수사기관을 통한 재통보 규정이 이미 존재하므로, 동일 사실에 대한 이중 통보나 절차 중복 여부 검토 및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4와의 중복 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안 제59조의4 제4항 관련)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범위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안 제59조의7 관련)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통지 의무의 주체가 불명확하여 법적 책임과 역할이 혼재될 우려 • (안 제59조의7 관련)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자료요청에 관한 사항은 이미 현행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한국장애인복지 시설협회	• 장애인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해당 법률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장애아동 학대 관련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총 4개의 전문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업무 범위가 중복되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 간 역할과 책임, 업무 범위, 협조 절차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
지체장애인협회	• 장애아동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치로, 입법 취지에 충분히 공감함.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현장 대응의 일원화를 가능하게 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보호 가능

단체명	의견
제주도	• (안 제59조의4제3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시 ‘일반인에게 미공개하도록 한다’는 규정 추가 필요 • (안 제59조의4제4항 관련) 전문적인 지원을 할 때 ‘장애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추가 필요 • (안 제59조의21제1항 관련)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피해장애아동의 부모와 교사 포함 필요

문의처
02)6788-5502

<참고자료 1: 장애아동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별 현황>

구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5.12. 기준)	아동권리보장원 (‘25.12. 기준)	아동보호 전문기관 (‘25.12. 기준)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25.6. 기준)
기관 수	20개소(중앙 1개소, 지역 19개소)	1개소	102개소	229개 시·군·구
종사자 수	중앙: 6인, 지역: 각 5인(정원) * 현원은 추가인력 지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93인	각 14인(정원) * 현원은 추가인력 지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892명
법률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제22조제6항 등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6조 등	「아동복지법」제2 2조 등
관련 예산 (2026년 기준)	3,350백만원 (중앙: 764백만원) (지역: 2,586백만원)	31,332백만원	49,200백만원	-
주요 업무	- 장애아동 학대 예방 관련 연구, 실태조사, 교육·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통계생산 등	- 아동 정책에 대한 종합적 수행, 정책 수립 지원 등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연계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육 및 홍보, 시스템 구축·운영 등	피해아동 등 상담·치료 및 교육,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 사후관리, 유관기관 연계, 가정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등(사례관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조사, 사례판단, 아동학대 정보 처리, 사례관리 지도·감독 등

자료: 보건복지부